



농어업위 '수산업분과위원회, 임업분과위원회 신설'

- 수산업 및 임업 분야 논의의 전문성과 효율성 기대 -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농어업위에 수산업분과위원회 및 임업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25년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농어업분과위원회가 농업, 수산업, 임업 전반을 담당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업분과위원회, 수산업분과위원회 및 임업분과위원회로 세분화하여 각 산업 분야별로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

* 개편전 3개분과(농어업·농어촌·농수산식품) → 개편후 5개분과(농업·수산업·임업·농어촌·농수산식품)

신설되는 분과위원회는 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현장 의견수렴과 정책 제안 등 농어업위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그간 수산업계와 임업계는 분과위원회 신설을 꾸준히 요청해 왔으며, “이번 분과위원회 신설로 숙원이던 과제가 해소되었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장태평 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농어업위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수산업과 임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 조성과 비전 제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농수산식품팀	책임자	팀 장	양호섭	(02-6260-1231)
		담당자	사무관	소서진	(02-6260-1232)
	농어촌정책팀	책임자	팀 장	엄성준	(02-6260-1221)
		담당자	사무관	김형준	(02-6260-1227)

현행	개정안
제3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u>농어업분과위원회</u> , <u>농어촌분과위원회</u> 및 <u>농수산물식품분과위원회</u> 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제3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 <u>농업분과위원회</u> , <u>수산업분과위원회</u> , <u>임업분과위원회</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분과위원회의 소관 및 업무) ① <u>각 분과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제4조(분과위원회의 소관 및 업무) ① <u>각 분과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u>농어업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u> 가. <u>농어업 및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u> 나. <u>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 농정 수립에 관한 사항</u> 다. <u>남북농업협력에 관한 사항</u> 라. <u>농어업 및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 실현에 관한 사항</u>	1. <u>농업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u> 가. <u>농업(임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u> 나. <u>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적인 농업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u> 다. <u>농업의 남북협력에 관한 사항</u> 라. <u>농업의 다원적 가치 실현에 관한 사항</u>
2. <u>농어촌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u> 가. <u>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u> 나. <u>농어촌 생태·환경·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u>	2. <u>수산업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u> 가. <u>수산업(어업 및 양식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u> 나. <u>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적인 수산업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u> 다. <u>수산업의 남북협력에 관한 사</u>
3. <u>농수산물식품분과위원회: 다음 각</u>	

현행	개정안
<u>목의 사항</u> <u>가. 농수산 식품의 생산·가공·공급·소비 등 먹거리 전반에 관한 사항</u> <u>나. 농수산식품 분야의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u> ② (생략)	<u>항</u> <u>라. 수산업의 다원적 가치 실현에 관한 사항</u> 3. <u>임업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u> <u>가. 임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u> <u>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적인 임업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u> <u>다. 임업의 남북협력에 관한 사항</u> <u>라. 임업의 다원적 가치 실현에 관한 사항</u> 4. <u>농어촌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u> <u>가.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u> <u>나.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 실현에 관한 사항</u> <u>다.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u> <u>라. 농어촌 생태·환경·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u> 5. <u>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u> <u>가. 농수산 식품의 생산·가공·공급·소비 등 먹거리 전반에 관한 사항</u> <u>나. 농수산식품 분야의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u> ② (현행과 같음)